

|              |                         |
|--------------|-------------------------|
| 의안번호         | 제 469 호                 |
| 의 결<br>연 월 일 | 2010년 3월 일<br>(제 288 회)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연월일 | 2010년 3월 2일 |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469 |
|------|-----|

제출연월일 : 2010. 3. 2.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표창시 함께 수여하는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변경함
- 나. 표창대상을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로 정함(안 제2조)
- 다.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수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표창권자를 교육감 및 교육장 등으로 정함(안 제8조)
- 마. 표창시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부상(副賞)의 종류를 구체화(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함(안 제9조제2항)
- 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사. 표창권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표창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
- 아. 표장을 받을자가 사망 등 사유로 직접 수령이 불가한 경우 유족 등 대리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자.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장의 표창 수여시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 아. 다른 조례의 개정
  - 본 조례 제명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부칙에서 개정하고자 함
- 자.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함
  - 1) 띄어쓰기
    -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고 본문을 씀

2) 용어정비 등

- 의한, 의하여, 의한다 → 따른, 따라, 따른다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에 따라
- 다음 각호의 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범위내에서 → 범위에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2009. 12. 11. ~ 12. 31.(의견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5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대외적으로 충북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9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폐,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순위 또는 등급 등이 미리 정해진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육과장(청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관리과 총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교육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는 해당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지역교육청은 국장·과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 수령) 표창을 받을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면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9조“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2조“로 한다.

제7조 단서 외의 부분 본문과 제10조 중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각각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안)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안)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사문안)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

직인

### [별지 제4호서식]

# 공적조서

(앞 면)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9)

[190mm×268mm( 신문용지 54g/ m<sup>2</sup>)]

(뒷면)

| ⑯주요학(경)력      |      |
|---------------|------|
| 연 월 일         |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 ⑰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
| 수여일자(연 월 일)             | 포상종류 |
| · · ·                   |      |
| · · ·                   |      |

  

| 공적내용 |  |
|------|--|
|      |  |

[별지 제5호서식]

## 표창대장

| 표창<br>번호 | 피 표창자 |    |    |    |    | 표창내용 | 표창<br>종류 | 표창<br>년월일 | 기재자<br>날인 | 확인자<br>날인 | 비고 |
|----------|-------|----|----|----|----|------|----------|-----------|-----------|-----------|----|
|          | 직명    | 성명 | 연령 | 성별 | 소속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p><u>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u>의한 표창은 본도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기관·단체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에게 행한다.</u></p> <p>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u>의한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u></p> <p>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p>1.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경우</p> <p>2.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p> <p>3.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p> <p><u>&lt;신 설&gt;</u></p> | <p><u>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u>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u></p> <p>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u>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u></p> <p>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li> <li>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li> </ol> <p><u>&lt;삭 제&gt;</u></p> <p>제5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p> <p>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제6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p>1. 교육 · 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p> <p>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
| 1. 교육 · 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br>2.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br>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br>4.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 제5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p>1.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경우</p> <p>2. 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p> <p>3. 대외적으로 충북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p>  |
|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 제8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
| 제7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br><br>② 제1항의 표창은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p>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제10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순위 또는 등급 등이 미리</p>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③ 폐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p>   | <p>정해진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
| <p>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및 표창 추천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도 교육청에는 "충청북도 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p> <p>2. 하급교육청에는 "충청북도 ○○ 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p> <p>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중 상위직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표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p>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장(청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관리과 총무담당이 된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p> |
|  | <p>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교육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p>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표창추천) 제 4조 내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추천은 본청의 각국·담당관 및 각 과장과 교육장 표창인 경우 교육청 각 과장 포함) 산하기관장 및 유관기관장(의뢰기관장 포함)이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p>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 교육청 소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는 해당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p> <p>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 (지역 교육청은 국장·과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p> <p>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p> <p>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 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b>&lt;삭 제&gt;</b></p> |
| 제11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 제12조(이중 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 제16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 5호 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대리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 할 수 없으면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
|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   |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br>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 <u>&lt;신 설&gt;</u> | 제13조(표창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창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 <u>&lt;신 설&gt;</u> |  |
| <u>&lt;신 설&gt;</u> |  |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9420호, 2009.2.6, 일부개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2.20, 타법개정]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창안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의 종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